

제 1426 호
1988.1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용 래
편집인 : 공 보 관 윤 두 영
전 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레

◎ 공문사항	
'88 제 9 회 학상심사결과 발표통보	3
◎ 규 칙	
제 2265 호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 시행규칙 중개정 규칙	5
◎ 고 시	
제 58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31
제 904 호 : 도시계획사업 (하천개수) 실시계획인가정정	31
제 90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32
제 911 호 : 사방거정지역제	33

(이면재속)

공													
찰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917 호 : 사방지정지 해제	38
제 918 호 : 가스사업 등 의뢰 가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지침	54
제 930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54
⑥ 공 고	
제 822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완료	55
제 825 호 : 특경설비제조업소허가취소처분	55
제 834 호 : 가락제2구역주택개발재개발사업공사완료	56
제 836 호 : 천호제2구역주택개발재개발사업공사완료	56
제 837 호 : 주민등의견청취를위한도시계획(안)공고	57
제 839 호 : 서울역~서대문제1구역제7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57
제 840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58
제 855 호 : 역촌구역(2차)주택재개발사업공사완료	60
제 858 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공람	60
제 866 호 : 전기공사업체행전처분	61
제 868 호 : 서초구제4지구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61
제 869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기간연기)인가	62
제 872 호 : 재개발사업에관한공사완료	62
⑦ 구 고 시	
제 4 호 : 고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63
제 110 호 : 동판인개각사용승인	64
⑧ 구 공 고	
제 118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	65
제 149 호 : 주택자재생산업자동화취소	65
제 322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허가에따른서류공람	66
⑨ 사업소고시	
제 34 호 : 하천점용허가	66
⑩ 사 헌	

제 1426 호 시

보 1988. 12. 5. 72

공 문 시 행

“듯모아 하나로, 힘모아 새제로”

(평 일 생 악)

서 울 특 별 시

서 경 01226-268

(731-6151)

1988. 11.

수 신 우신처 참조

(3년)

제 목 : 학 상 심 사 결 과 발 표 통 보

1. '88년 제 9회 시정발전 학 상 심 사 결 과 및 사상여연을 열친다.
시달하니 직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 적극 권장하여 시정발전 학상제도 운영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첨 부 '88년 제 9회 채택학상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시정개발담당관 전경)

수신처 서과 1-71, 서사 1-57, 서구 1-22, 서보 1-22.

0A04

72-4 제 1426 호. 시

보 1988. 12. 5

차상등급	차 상 내 용	비 고
노 력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번호 :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부식된 화강암 경계석 세척 ○ 세종로 충양분리내 경계석이 노후 부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교체시공이나 특수제일트를 도색시 많은 예산과 기일이 소요되므로 ○ 특수약품으로 세척처리하여 "돌"의 원색을 찾도록 하여 시공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 (기대효과) ○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 개고 차상자 : 녹지사업소 지방임업기원 김진열 ○ 집수번호 : 1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신청과 급수신청의 일원화 방안 ○ 급수 가능 지역에서는 단독주택건축허가 신청시 급수공사신청을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처리하므로서 건축허가후 즉시 착공가능토록 수전을 개천하여 사용토록 건축허가신청과 급수공사신청의 일원화 (기대효과) ○ 건축허가후 급수공사 신청을 하므로 불필요하게 1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제거 차상자 : 노원구 건축과 건축기자 주수님, 기계기사보 최민선 ○ 집수번호 :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구매물품납품검사원 제도개선 ○ 조달물품 구매시 조달청에서 물품납품 계약체결후 납품업자가 납품검사를 요청할때 물품납품 및 영수증파, 납품검사원의 2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되어 있어 불편하므로 ○ 물품납품 및 영수증의 시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납품검사원을 생략토록 제도개선 (기대효과) ○ 불필요한 첨부서류 개선으로 민원불편해소 및 행정능률화상 차상자 : 재무국회세과 지방행정서기 권영희 	시장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노 력 상		

착상등급	착상내용	비고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등 관리개선 ○ 안양하수처리장의 최초 침전지 관람의 조명등이 백열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수명이 짧고 등교가 높아 보수작업시 많은 일력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 백열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등교의 높이를 조정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효과) ○ 조도한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 철거요금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상자 : 안양하수처리장 지방경기기사보 김현근 안양하수처리장 지방경기기원보 신우요철 ○ 접수번호 : '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기 알류 종합대장 비치관리 ○ 각종 서세, 광파금 체납시 그 보전책으로 부동산 알류등기를 하고있는바 등기부상에 알류사유 및 알류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류부서 확인시 불편하므로 ○ 종합알류대장을 비치관리하든지 관계기관 (대법원, 내무부)에 알류 처분청의 해당부서명을 세부적으로 기재도록하여 알류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상자 : 동대문구 재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조선호 ○ 접수번호 : 8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전기사용업종변경 ○ 현재 서울시 475개동중 180개동이 전기사용설정을 주택용으로 계약 사용하고 있어 과중하게 거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있는 동사무소중 297개(은 	시장표상 및 시상금 10만원
동상		시장표상 및 시상금 100만원

72-6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차상등급	차상내봉	비고
장려상	<p>익분가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163개동의 전기업 종을 업무 1종(공공용)으로 변경사용토록하여 연간 23,530천원의 예산을 절감도록 개선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요금 예산절감 (년 23,530천원) 착상자 : 은평구 수색동 지방행정주사 백재승 은평구 수색동 지방행정서기 조정구 ○ 접수번호 : 8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의 효율적 관리 예산절감 ○ 각동사무소에 생방기용 동력선이 설치되어 비사용기간 (8개월) 동안에도 계약전력요금 (11kw기준) 48,940원을 낭부하고 있는 바 ○ 비사용기간에는 동력선을 폐지하고 사용기간 (6~9월) 동안에 새설치 신청하여 사용토록하여 예산절감 (기대효과) ○ 비사용기간의 전력요금절감 착상자 : 강서구 광향동 지방행정서기 김용인 	<p>시장표창 및 시상금 30만원</p>

규칙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
증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8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 서울특별시규칙 제 2265호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증개정
규칙

서울특별시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제 2호증 "산림법 제 18조의"를 "산림법 제 56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 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광고물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 1항 제 3호의 구비서류와 허가증외에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광고물의 안전점검확인서

률 첨부하여 설치기간 만료 7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리공단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에 부 대하여 운영하는 광고업무
제 5 조 제 3 호중 “산림법 제 18 조의” 를 “산림법 제 56 조의”로 하고, 동조제 4 호중 “공원법 제 3 조의”를 “자연공원법 제 4 조 내지 제 6 조의” 로 하며, 동조 제 8 호를 다음과 같 이 하고, 동조 제 16 호중 “제 1 호 내 지 제 15 호 이외에 미관풍치를”을 “기타 미관풍치 또는 도시환경정비 물”로 한다.	8. 경기장 또는 운동장 내부에 설 치하는 광고물, 다민, 광고물의 내용 이 경기장 또는 운동장의 환경에 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때에 는 예외로 한다.
8. 교량, 축대, 육교, 고가도로, 다단 육교에 공익성이 있는 한시적 광 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때에 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제 1 항 중 “(별보지류, 차량 이용광고, 전단, 조각형등은 제외)” 를 삭제하고,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7 호중 “제 13 조의”를 “제 2 조 및 제 13 조의”로 한다.	“다만, 제 8 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광고물과 벽보지류, 차량이용 광고, 전단 및 조각형 광고물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애벌광고물 및 옥상광고물, 다단, 공공의 복서수행상 필요하고 별표 1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애벌 광고물과 별표 12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 의 옥상광고물은 예외로 한다.	제 13 조 제 1 항 중 “별표 1 내지 별 표 12”를 “별표 1 ~ 12”로 하여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 제 1 항 중 “미관풍치를”을 “미 관풍치 또는 도시환경정비를”로 하 고, “일정지역을”을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등 미관상 필요한 최소지역 을”로 한다.	④가로간판, 세트간판, 불출간판, 지 주이용간판과 형광류 및 배운류광 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에 규정 한 설치방법외에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 3 호 및 제 8 호를 각자 다 음과 같이 한다.	1. 광고물의 규격, 설치위치등은 동 일건물 및 주변건물의 간판과 조 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시설관	2. 1개 업소에 1개 관판만을設 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p>2. 1개 업소에 1개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p> <p>3. 합판, 스치로폼, 스티로, 5% 미만의 아크릴 및 비닐류등 저질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누이 슬지 아니하는 자재(비철금속, 스텐레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p> <p>4.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KS 규격 전기제품이나 점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의 외부노출을 금한다.</p> <p>5. 자기영업소 및 자기건물에 관련이 없는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p> <p>6. 무허가건물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p> <p>6. 담장위에 따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p> <p>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제 5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 발견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을 때</p> <p>제 15 조 제 2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 3 항 내지</p>	<p>제 7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설이 불가피한 때</p> <p>③ 구청장은 설치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개수·이설·도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법 제 5 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판의 종류와 내용 2. 광고판의 크기와 수량 3. 광고판의 설치장소 4. 광고물의 설치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성명·주소 5. 대집행일시 6. 대집행비용 7. 대집행비용 정수방법 <p>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설치자에게 대집행한다는 뜻을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하여 제고하여야 한다.</p>
--	--

<p>⑥ 제 5 항의 제고기일 내에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에 의하여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하여야 한다.</p> <p>⑦ 대집행을 한 경우에는 대집행비용을 별지 제 14 호 서식의 비용날부명령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제 15 조의 2 제 3 항 제 2 호를 삭제하고, 통합 제 3 호 내지 제 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p> <p>4. 제 1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광고물</p> <p>5. 높이 4미터 이상의 물줄광고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배온광고물 및 경축용 소형집열등의 설치</p> <p>6. 별표 5, 볾표 6, 볾표 8 내지 볾표 12 및 볾표 19에 규정한 광고물</p> <p>제 15 조의 2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⑤ 제 3 항중 제 1호, 제 3호, 제 7호 중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제 13 조 제 3 항 제 1호 및 제 3호는</p>	<p>반드시 서울특별시설의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p> <p>〈별표 1〉내지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4〉내지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별지 9호서식〉내지 〈별지 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광고물은 설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미허가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구역, 승강장,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의 공장 옥상등의 광고물등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이 주체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주체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72-10 제 1426호 시

보 1988.12.5

<별표 1>

가 트 간 판

규격	색채	형상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1. 문자의 크기 70cm× 70cm이내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또는 문자 색체는 혹·적색 1/2 초과 금지	조각형	1. 벽체에 직접 조각형 문자로 부착 하되, 5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1층에는 판류이용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2. 도도곡각지점에 면한 엘소는 축면 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벽체에서 20cm이상 둘출할 수 없으며, 삼각형등 변형간판은 설치 하지 못한다. 4. 비온유를 사용할 수 있되, 그 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5. 5층이상 건물에는 건물상단의 정면 또는 축면의 1개소에 건물 명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벽면 폭의 1/3 이내 크기로 조각 형문자를 벽체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6. 단층건물의 첫면을 가리는 가 림판은 지붕높이 이하로 하되,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가림판을 이용하여 별도간판을 부착하는 때에는 주변간판의 높이 와 같아야 한다. 8. 3층이하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3.5㎡미만의 간판은 신고없이 설치 할 수 있으며, 4층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3.5㎡미만이라도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 2년이내
2. 판류의 크기 • 가로: 건물폭이내 70cm이내 및 층간 벽면높이 이하 (동일 건물통일)				

<별표 2>

세로간판

규격	색체	글자면적	설치방법	부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세로 200cm 이내 X 가로 60cm 이내	1. 청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또는 문자 색체는 혹•적색 1/2 초과 금지	표시면적의 3분의 2 이내	1. 2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 며, 1층일 경우 양측에 각각 1 개씩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2. 연합광고시 개별 간판 규격은 가로 60cm X 세로 50cm를 초과 하지 못한다.	허가(신고) 필요 없음.

<별표 3>

돌출광고물

규격	색체	글자면적	설치방법	부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돌출	전이				
벽면으로 부터 1 m이내 (부착 장치 포함) 이하 20m 이하 (상업지역 은 30m 이하) 5m 이하 의 길이는 5m 이하	1. 당해건물 지붕높이 이하 및 색 및 은 30m 이하) 2. 개별간판 의 길이는 5m 이하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바탕 색 및 문자 색체는 혹•적 색 1/2 초과 금지	1. 전관면적 의 2/3 이내 2. 개별문자 크기: 주변 경관 고려 신축성있게 표시 도안별도 금지	1. 벽면이용 돌출은 3층이상 의 건물에 한하여 기상 3m (인도가없는 경우 1m) 허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면, 병원, 약국등 공익성이 큰 광고물에 대해서는 2층 이하리로 설치할 수 있다. (봉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2. 목조건물, 가전물 및 전물 전면폭이 10m미만의 전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전물전 면폭이 10m미만인 경우에도 인접건물과 전면폭을 합한 면 이 10m 이상인 때에는 연립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허가, 2년이내

72-12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규 격		색 체	글자면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돌 출	길 이				
				<p>3. 벽면과 광고물은 밀착시 켜야 하며, 간격을 둘 필 요가 있을 때에는 20cm 이내로 한다.</p> <p>4. 한우이나 가진풀의 뒷면을 가리운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시설상단을 지붕으로 간주한다.</p> <p>5. 철주를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1m이상 거리를 두고 차기 소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 며, 저상높이는 4m이상 8 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6. 힘받이를 반월대로 사용할 수 없다.</p> <p>7. 비온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6에 의한다.</p> <p>8. 연립간판 설치시 3층이상 업소에 우선 설치하며, 업소 를 상정하는 상정형 간판설 치를 권장한다.</p> <p>9. 건물의 구조상 불가피하거 나 도시미관을 충진시키기 위하여 기준 및 규칙을 초 과할 때에는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0.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1. 연합간판의 상하광고물간 거리는 조화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둘출의 폭·두께는 동 일하여야 한다.</p>	

제 1426 호 시

도 1988.12.5 72-13

<별표 4>

공연광고물

규격	수량	색체	설치방법	허가신고여부 및 설치기간
세로: 전문 높이의 1/4 이내 가로: 전문 전면폭의 1/3 이내 * 전문이라 함은 공연장 전용전물 또는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주전물을 말함.	상영프로: 1 차희프로: 1	형광도료 사용금지	1. 전문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둘 출할 수 없으며, 낙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광고물 하단을 3cm 이상으로 한다. 3. 실물의 모형등을 도안할 때에도 구격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 내용은 1개만 표시할 수 있다. 5. 공연내용의 신전을 위한 별도 광고판 또는 임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허가, 공연 종료시 까지

<별표 5>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

규격	색체	설치방법	허가신고여부 및 설치기간
공공시설물 표시면적의 1/3-1/5 이내	1. 형광도료 사용금지 2. 바탕색 또는 글자 색체는 후·적색 1/2초과 금지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문자가 표시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문자 와 혼동되는 광고문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표내의 자체문자는 예외로 한다.	허가, 2년이내

72-14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3. 설치대상지역은 이스, 백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판광안내도, 지정벽보판,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시장승인) 4. 설치장소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대중교통의 요충지, 보도, 도심 간선도로 등에 일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광고물

종별	규격	지상높이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동래 광고 기내	세로 100cm 가로 30cm 이내	지상으로 부터 3m 이상	1. 흥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은 회색 1 / 2 초과 금지	1. 1개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1개 의 둘레 광고판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안전표지) 가 첨부된 전 주 및 가로등주에는 광고판 부착을 금지한다.	허가, 2년이내

(별표 7) 서비스광고물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당체광고물 포시연적의 1 / 3 이하	광고판인경우 바탕색은 회 적색 1 / 2 초과 금지	1. 광고의 동일내용은 1개만 표시한다. 2. 광고내용의 상품류를 계속하여 판매하기 아니하는 업소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필요 없음. 다만, 전판 면적 3.5m ² 이상은신고

《詩經》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표지위치	구격	색·채·재료	설·차·방·법	위치면 여부 및 설치기준	
1. 버스 (전차) 내부과 석상부 공간	기로 30cm ×세로 60cm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비광 죽은혹 •적색 1/2초 과금지	1. 좌석상부공간 이용광고판은 경고설치 마니라 액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차내에 동일내용의 광고물은 1 개만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에 따라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승객에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4. 차량의 상태가 불량한 차내에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5. 스크린, 알미늄등을 이용 미려한 액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내부벽과 밀착하여야 한다.	허가, 2년이내	
2. 차량 양측면 (자기 차량)	1. 문자· 회화표시 면적: 1.5미터 2. 상표: 1/2미터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비광 혹•적색 1/2초파 금지	1. 차량전면 및 후면에의 광고표시는 금 한다. 2. 자가용에 한하여, 자기차사명, 상징형 도안 및 전화번호표시에 한한다. (평면문자) 3. 광고판인 경우에는 일착시켜야 한다.	신고, 2년이내	
3. 버스측 면 및 후면	1. 측면: 60cm× 90cm미터 2. 후면: 25cm× 50cm미터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비광 혹 적색 1/2 초과금지	1. 광고물은 일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개차량에 측면 각 1개, 후면 2개 이내	허가, 2년이내	

72-16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지 하 도 광 고 물					
(별표 9)					
표시위치	규격	색 채	재료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 기간
1. 지하 도벽면	가로 3m × 세로 2 m 이내	흑·적색 L/2초파 금지 (사 진의 경 우체국) 광고	1. 슬라 이드 2. 전자 식조명	1. 벽면에 밀착하여 20cm 이상 둘출할 수 없다. 2. 동일 지하도내에 동일내용의 광고 물은 1개이상 개시 할 수 없다. 3. 방향표지판과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동일벽면에 나란히 설치되어 방 향표지판의 기능을 저해시킬 위치에 는 설치 할 수 없다. 4. 주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위치 가 통일되어야 하며, 광고물간 상호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5. 주민불편의 악전을 위하여 천정부 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허가, 2년이내
지 하 철 역 광 고 물					
(별표 10)					
표시위치	규격	색 채	재료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 기간
승·하차장 건너편	세로 90cm 이내 × 가로 180 cm 이내	1. 형광 도료사 용·금지 금지 (사 진의 경 우체국)	1. 배온 (점멸식 금지) 2. 슬라 이드 L/2초파 금지 (사 진의 경 우체국)	1. 벽면에 밀착하여 벽면으로부터 10 cm 이상 둘출할 수 없다. 2. 광고물간 상호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여, 설치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3. 동일역내에 동일내용의 광고물은 1 개이상 설치 할 수 없다.	허가, 2년이내

(별표 11)

야 립 광 고 물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및 설치기간
시장 또는 구청장이 현지 여전을 고려하여 결정	형광도료 사용금지	<p>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군사 또는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한하여 결코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기관의 설치요청이 있을 때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등을 고려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시설의 차폐를 위한 야립광고물에 있어서는 인공 및 자연차폐가 불가능하여 광고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p> <p>2. 광고물 표시면적의 제한 및 색상등은 주변 경관등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p>	허가, 2년이내

(별표 12)

옥상광고물(광고탑 포함)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및 설치기간
1. 건물 1면 공간(가로×세로)의 각각 2/10 이하×높이 (건물옥상 바닥에서) 5m이하 2. 다만, 층 해 규격은 가로 10m ×세로 7m ×높이 (건 물옥상바닥 까지 5m이하)	1. 형광도료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색에는 흑·적색 1/2초과금지	<p>1. 광고탑은 옥상바닥면에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다.</p> <p>2.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의 공장, 육상, 기업체 본사건물 옥상에 기업체명, 공장안내, 자사제품에 한해서 업체당 1개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p> <p>다만, 주거지역과 밀접하거나 고속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교통안전이나 미관상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p>	허가, 2년이내

72-18 제 1426 호 시

보 1938.12.5

규격	색체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p>3. 동일건물의 옥상에는 우상광고를 1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건물 옥상의 광고물과의 상호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이나 소유주 또는 경영주가 각각 다른공장이 연립하여 있어 50m의 거리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4. 도로에 면한 옥상면면 외벽과 나란히 설치하여야 하며, 하며 채화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5. 광고판이면과 하단의 지주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도색, 도폐방지, 수시보수), 철거등을 위하여 철거소요설비를 예치·도록 하여야 한다.</p> <p>6. 계시시선은 전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 부속품은 절지봉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내온사용 불가)</p> <p>7. 목조건물과 가건물에는 설치하지 못한다.</p> <p>8.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내 1년마다 안전점검 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별표 13)

율 림 피 광 고

종류	설치장소	규격	색상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1. 시내버스 외부 광고	노선버스 좌우측면 (가로) × 50cm 이내	좌우측면 200cm (세로) × 50cm 이내	1. 알미늄 2. 크로스 3. 스판레 스	<p>1. 형광도 로 사용 금지</p> <p>2. 바탕색 문자 및 형상도안 색상은 축·적색 1/2초과 금지</p>	<p>1. 유티리티광고는 광고물설의 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허 가한다.</p> <p>2. 1개 차량에 좌측면 1개, 우측면 1개, 우측면 광고판 은 노선번호 및 행선안내 식별에 지장이 없도록 부 착하여야 한다.</p>	허가 1년이내

종 류	설치장소	규 적	재 료	색 상	설 치 반 병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색상은 회·적색 1/2 초 과금지	3. 광고판은 일차되도록 하여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용 택시 광 고	택시 표지 등	1. 일체적 습각형 2. 가로 64cm~ 91cm이 내(58- 91.4cm) 3. 높이 (세로) 24cm 내 4. 밀연 20cm 이내	1. 아크릴 2. 프 라 스 티 금지	1. 형광도 로사용 (바탕 색은 짙 은색으 로 한 다)	1. 양쪽 4 각면에 광고표시 2. 전후 3 각면에 회사명 등 표시 *내부에 전구를 부착하여 방법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허가, 1년이내
3. 환경정 화용대 행광고		20cm(가 로)×10m (세로) 이내	영글철판	1. 바탕색 형광도 로사용 금지 2. 바탕색 은 회· 적색 1/2 초과 금 지	1. 설치장소, 선정기준 : 철도, 국도, 고속도로변 등 환경이 불량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차폐 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장소로서 ○자동차등의 차량시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곳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지 않 나하는 곳 ○도로, 체방등 시설물의 기 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곳	허가, 1년이내

72-20 제 1426 호 시

1988.12.5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중이거나 추진층인 공사에 지장이 없는곳 ○ 지역경관등 주변경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곳 2. 차폐미화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탑광고	올림픽대 회와 관 련있는 주요관광 지 및 경기장내	지 높 15m이내	1. 철 판 2. 시멘트 3. 알미늄 4. 스텐레 스등	1. 바탕색 형광도 료시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가가 설계하여 광고 물 실의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허가한다. 2.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허가, 1년이내
5. 전광판 광고(네 온광고)	1. 대도시 의 상가 터미널 의 우상 또는 벽면 2. 서울을 휩싸대 회조직 위원회 와 허가 청이 협 의하여 위치를 결정하 되, 기	20m(가로) × 15m(세로)이내	전광판류 의 특성 에 따르 되, 우수 구격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가가 설계하여 광고 물 실의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허가한다. 2. 특히 주간에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심야소동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주거전용 및 주거지(APT) 인접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 1년이내

제 1426호 시

보 1988.12.5 72-21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텁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존의 다른시설물에 부가설치 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인증도등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6. 지하철 역 및 전철역 광고	1. 지역의 구내에 2개이내 2. 설치위치는 판계기준과 협의 결정 · 지하철역 - 서울 지하철 공사동 · 수도권 전철역 - 철도청	250㎟ (가로)× 150㎜ (세로) 이내			1. 역구내의 모든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여객안내용 표지판 등의 기능을 저해하기 아 나라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 1년이내

72-22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별표 14>

지 주 이 용 간판

종 류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 기간
지 주 이 용 간판	1. 화단폭의 1/3 이내 2. 높이 8 m 이하 3. 높이 4 m 이상은 전 축법상 전 축부사와 사전 협의	1. 평평도로 사용 금지 2. 바탕색 또는 글자 색채는 흑· 적색 1/2 초파 금지	1. 자기소유 화단 또는 사유지, 공한 지등에 화단조성후 설치할 수 있다. 2. 기재사항은 기업체명, 공장 안내표 시에 한한다. 3. 도로경계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4.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 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허가, 2년이내

<별표 15>

철 광 류 및 네 온 류 광 고 물

종 류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 기간
가로간판 돌출간판 및 건물 벽면간판	1. 가로간판 및 돌출간 판규격이내 2. 건물벽면 간판의 규 격은 세로 5 m이만× 가로건물길 이 조화	적색류 표지는 네온 간판면적 1/2 초파 금지	1. 주거전용지역, 교육 및 인구지구에 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중 노폭 15 m 이상 도 로에 접하는 경우와 특수지역(의료 기관, 학교,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구역)은 예외로 한다. 2. 건물벽면간판의 경우 4층이상 건 물벽면의 전면 및 축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벽체에서 40cm이상 불출 불가)	허가, 2년이내

종 류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 기간
			<p>3. 한옥·목조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p> <p>4. 신호등 부근 50 m 전후 좌우에는 점멸식 및 신호등과 같은 색은(색·창·녹색)을 사용할 수 없다.</p> <p>5. 경계등(소형조명전구), 상업용 전자식 전광판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지역(의료기관, 약국, 관광호텔, 역·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구역)에 한하여 상업용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p> <p>6. 청소년선도 유해업소(디스코, 성인극장 등)의 자극적이고, 원성적(적색광) 색상 표출을 금지한다.</p> <p>7.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고속도로등이 전망되거나, 교통안전상 또는 도시미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p> <p>8. 시장 또는 구청장은 풍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지역 및 설치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9. 설치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하여야 한다.</p> <p>10.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내 1년마다 안전점검 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별표 16>

이 · 미 용 소 사 인 블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 기간
지름 25cm ×길이 70cm 이내	1. 2 색이내 2. 신형적 도체 만 표시 가능	<p>1. 1개업소에 1개소에 한한다.</p> <p>2. 경물 1층 출입문 측면 점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p>	허가, 2년이내

72-24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3. 천주를 이용할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자기소유지에 화단 조성 후 높이 2m 이하로 설치한다. 4. 둘출은 부착 부분에서 50cm 이내이어야 한다. 5. 통행에 지장이 없게 안전하게 설치한다.	

(별표 17)

주요소율싸인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가로 230cm 이내 X 세로 150cm 이내	1. 형광도료 사용금지 3. 바탕색은 록·적색사 용 금지하 고, 문자는 1/3 이내	1. 1개업소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2. 자기영속, 소유지내에서 철주(쌍주 및 단주)를 이용할 경우 높이 10m 이내로 설치하여, 도로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정도안 및 영문병기를 전장한다.	허가, 2년이내

(별표 18)

철도역 입간판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가로 5m X 세로 4m X 지상높이 5 m 이내	1. 형광도료 사용금지 2. 바탕색및 문자 색채 는 흑·적 색 1/2초 과금지	1. 철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경찰서와 사전 협조 다만, 자기소유지일 경우 계외) 3. 철도역 구역(철도연변)에 설치시는 역사에서 50m(상·하행)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철도역 구역(연변)의 입간판은 평고물 상호거리를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허가, 2년이내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p>5. 철도연변 광고물은 철도부지내에 설치하되, 철도 브일로부터 2m이상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철도의 끝(바깥쪽)으로는 광고표시를 할 수 없고, 철주등이 보이지 않도록 미판을 유지하여야 한다.</p> <p>6. 철도, 전철역 승강장의 각종 입간판과 벽면부착(가로간판, 세로간판)은 상업용간판은 승객들의 방향 표시식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역사마다 10개이상 설치할 수 있다. (1개간판 면적은 1m²이내)</p> <p>7. 철도역 승강장의 입간판은 지상높이 1m를 초과하지 못한다.</p>	

(별표 19)

고속도로변 휴게소내 광고물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1. 시계탑 광고	1. 형광도표 사용금지	1. 시계탑광고, 관광안내도, 휴게소 안내탑광고는 휴게소마다 1개소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허가, 2년이내
2. 관광안내도 가로 7m 내×세로 8m이내 ×높이 10 m이하	2. 바탕색및 문자 색체 는 흑·적 색 1/2 초화금지	2. 고속도로, 국도연변 50m이내는 입간판, 아담형태 이외 유사한 형태의 교통설비제도, 행정시체구호, 상업광고등을 위한 광고물 설치는 금한다.	
3. 계시판 가로 2m 이내×세 로 1m이 내×높이		3. 시계탑광고, 관광안내도, 계시판, 안내탑에는 상업광고 표시가 전체 광고표시 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스텐레스, KS구격자재 등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자재로 안전과 미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높이 4m이상의 시계탑, 관광안내도, 안내탑광고는 전축법에 의한 공작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72-26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4m 이하 4. 흑계 소안내 판광고		5.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 검 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0)

비행선광고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선체규격 내내	1. 청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색 는 꼭, 강 색 1/4 초과금지	운항시 보안상 허가가 필요한 지역은 신청 인이 미리 관련부처 또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서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허가, 20일이내

(별표 21)

기타광고판

종류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1. 입간 판(선 전판, 아취 포함)	1. 지상 · 8m 이하 하 2. 폭 1 m 이하 적색 1/2 초과금지	1. 청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색 채는 후. 적색 1/2 초과금지	1.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경찰관서와 사전 협의) 2. 통행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소 유지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3. 광역성 및 공공성이 없는 순수 상업광 고를 금지한다. 4. 아취 및 선전판의 경우 바로 지정해 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아취 및 선전판의 경우 도로점용 및 공작용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20일이내

종 류	규 格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기기간
			6. 20일 이내 한시적인 설치광고물에 한 한다.	
2. 순수 흑 : 1m 막 이내 길이 : 현 장 조화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체 는 흑. 치 색 1/2 초과금지	1. 광중의 통행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상높이 4m 이상으로 하고, 저층높 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공공성 및 공익성이 없는 순수상업광고 를 금지한다. 4. 문자, 회화등 표지는 나염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신고, 1월이내
3. 프랑 카드	흑 : 1m 이내 길이 : 현장 조화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치는 흑. 치색 1/2초과 금지	1. 광중의 통행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상높이 5m 이상으로 한다. 3. 20m 이상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될 수 없다. 4. 공공성 및 공익성이 없는 순수상업 광고를 금지한다. 5. 문자, 회화등 표지는 나염으로 제작하 여야 한다. 6. 양측 저지대로 가로수를 사용할 수 없다.	신고 1월이내
4. 애드 벌룬	흑 : 2m 이내 길이 : 현장 조화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체 는 흑. 치 색 1/2초 과금지	1. 광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려면, 도록 하여야 한다.	허가, 1월이내
5. 벽보 지류	지정 벽보 규격 이내 (190cm X 90cm) 지	바탕색은 후. 개 형광 도로사용금 지	1. 신고하여 견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안로와 동시에 차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지정 벽보판의 장소에 첨부할 수 없다. 4. 1개 저지 벽보판에는 동일 내용의 광 고물을 1개이상 첨부할 수 없다.	신고, 15일이내
6. 전단	새로 30 cm X 가로 40cm	바탕색 또는 문자 색체는 치색 1/2 초과금지	1. 가로에 살포되거나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중살포 제외)	신고, 15일 이내(광중 살포는 해 가5일이내)

72-28 채 1426 호 시

보 1988.12.5

(별지 제 9호 서식)

광고물 안전점검 확인서

신 청자	장 소		
성명	업체명		
광고물 허가번호 및 일시	설명	주민등록번호	
표시(설치)의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종류	
점검자	주 소		
성명	업체명	전화 번호	
	④	전화 번호	④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98

제출자

구 청장 치하

(별지 제 10호 서식)

광고물 표지 설치 허가증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자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하가 신청한 광고물 표시(설치) 허가에 대하여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함.			
1. 광고물의 종류 및 사용 목적			
2. 설치자 및 규격 및 사용 목적			
3. 설치 장소			
4. 허가 기간			
5. 관리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6. 시공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7. 허가 조건			

구 청장 ④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29

(별지 제 11 호서식)

울림막광고물 설치(표시) 허가증

○ ○시(구) 제 호

신 청 자

귀 위원회에서 신청한 울림막광고물 설치(표시) 허가에 대하여 광고
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 2조,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함

1. 광고물의 종류
2. 설치 목적
3. 설치 규격 및 수량
4. 설치 장소
5. 허가 기간
6. 관리자(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7. 시공자(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8. 허가조건

구 청 장

(별지 제 12 호서식)

제 호

계 고 서

주 소 :

성 명 :

귀하(또는 귀회사, 기타)가 아래 장소에 불법(또는 불량, 기타) 광고
물을 부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함은 실효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고서를 송달하오니 이 제고서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로 광고물을 제거
(정비)하십시오. 만약 지정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5조에 의하여 당 구청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 부터 징수하
겠습니다.

가. 광고물 설치 장소 :

나. 위 반 사 항 :

198

구 청 장 (인)

귀 하

72-30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별지 제 13 호서식)

대 집 행 영 장

제 호		
대 집 행 영 장	주소: 성명: 귀하(또는 귀회사, 기타)가 아래장소에 불법(불량, 기타)광 고물을 부착한 것에 관하여 19년 월 일 제고서를 송 달하였던 바, 지정기일내에 이행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 15조 에 의하여 당 구청에서 이를 집행하겠습니다.	대집행할 시기
	대집행 책임자 지위 성명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기준전적액	
19년 월 일		
구 청 장 직 성명 ④		
귀하		
(별지 제 14 호서식)		
제 호		
비 용 납 부 명 령 서		
주 소 성 명		
19년 월 일부 제 호 대집행영장으로써 시행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금액을 낸 월 일까지 당 구청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금 원 정		
내 역 1. 2. 3. 4.	원 원 원 원	
19년 월 일		
구 청 장 직 성명 ④		
귀하		

제 1426 호 시

보 1988. 12. 5 72-31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8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측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통령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988.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
획 승인
- 2. 사업주체 : 동부주택(주) 이용호,
정명섭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 가 656-322

나. 대지 면적 : 1,999.40 m²

다. 용도 : 일반분양 연립주택
라. 규모 : 연립 3 층 2동 36세대

마. 전 축면면적 : 3,361.22 m²

4. 사업시행 기간 : 1988. 7.-1988. 12.
첨부 설계도서(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904 호

도시계획사업(하천개수)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판보 계 10987 호('88. 7. 21)로 개재
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 614 호 도시계
획사업(하천개수) 실시계획 인가증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988. 11.
서 울 특 별 시 장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목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m ²)	정 정 사 항						비 고	
			당 초		정 정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 용		
관악구 신림동 23-1	1,031	1,031	강서구 신정동 955-9	어연선 1691번 19번 일가	관악구 봉천동 1691번 11	어연선 반포동 산 72- 11	강남구 반포동 11	맹보영 가등기		

72-32 제 1426 호 시

보 1988. 12. 5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정 정 사 항						비 고		
			당 초			정 정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내용
									서대문구 구 흥은 동 48- 84유진 ② 515	경영호 근처당	
									성동구 평창동 산 21 워커힐 ④ 238 902호	1 도전	*
									중구 대명로 1가 31	서 울 특별 시 장	양류
관악구 신림동 22	단	2,661 2,661	영등포구 구영동 포 2동 30번지	이 득화	영등포구 구영동 포 2동 가 220 번지	이 득화					

◎ 서울특별시고시제 90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0C'88. 9. 29)호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819호('88. 10. 14.)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53-231 ~ 553-20 간의 1개소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설시 계획인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 1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53-231 ~ 553-20 간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3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48-15 ~ 64-1 간	○ 성명 : 서울특별시장 (성동구청장) ○ 주소 : 서울시 종로 대평로 1 가 31 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 명칭 : 자양동 553-23. ~ 553-20 간 외 1 개 소도로 개설 공사 ○ 면적 또는 규모 ○ 폭원 : 8 미터, 연장 205 미터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년월일 ○ 착수예정년월일 : 1988년 11월 20일 ○ 준공예정년월일 : 1989년 6월 30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치목 및 소유권이 외 의 권리의 명세
토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사용 또는 사용면적	소유자		설지의 상황
				주소	성명	
시울시 성동구 성수2가 4동	64- 9	도로	210 m ²	성동구 성수2가 64-2	한상만 외 7인	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911 호

가. 사방지정지 해제조서 : 아래 (서초구 신원동 산 17 외 122 원)

사방지정지 해제

1. 사방사업법 제 20조 및 동법시 행령 제 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조에 의거 해제로시 합니다.

1988. 11. 22.

서울특별시장

사방지정지 해제명세서

소재지	지	지적	지정			해제	비고
			면적(m ²)	면적(m ²)	면적(m ²)	면적(m ²)	
서초 " "	신원 산 24	임야	992	992	48.2.5	992	사방사업법 20조 1항 동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30,942	30,942	68.4.23	30,942	"

구	동	지번	지목 (㎡)	지정세제				비고
				면적(㎡)	일자	면적(㎡)	사유	
서초	신원	산 25	임야	5,851	5,851	68. 4.23	5,851	사방사업법 20조 1항 동 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산 28	"	40,379	40,379	"	40,379	"
"	"	산 31	"	7,835	7,835	"	7,835	"
"	"	산 48-2	"	793	793	"	793	"
"	"	산 49	"	26,082	26,082	48. 2. 5	26,082	"
"	"	산 50	"	10,116	10,116	"	10,116	"
"	"	산 53	"	10,512	10,512	68. 4.23	10,512	"
"	"	산 58	"	17,355	17,355	"	17,355	"
"	"	산 60	"	5,256	5,256	"	5,256	"
"	"	산 6	"	11,504	11,504	49. 9.30	11,504	"
"	"	산 7	"	99	99	"	99	"
"	"	산 8	"	595	595	"	595	"
"	"	산 13	"	4,860	4,860	"	4,860	"
"	"	산 21	"	12,298	12,298	"	12,298	"
"	"	산 22	"	41,950	41,950	68. 4.23	41,950	"
"	"	산 26	"	18,645	18,645	"	18,645	"
"	"	산 27	"	31,736	31,736	"	31,736	"
"	"	산 29	"	13,091	13,091	"	13,091	"
"	"	산 30	"	10,413	10,413	"	10,413	"
"	"	산 32	"	1,289	1,289	"	1,289	"
"	"	산 33	"	13,587	13,587	"	13,587	"
"	"	산 34	"	6,050	6,050	"	6,050	"
"	"	산 35	"	24,793	24,793	"	24,793	"
"	"	산 36	"	17,157	17,157	"	17,157	"
"	"	산 37	"	18,744	18,744	"	18,744	"
"	"	산 39-1	"	724,536	724,536	"	724,536	"
"	"	산 39-18	"	22,116	22,116	"	22,116	"

제 1426 호 사

보 1988.12.5 72-35

구	동	지 번	지 목 (m)	지 절		해 계		비 고
				면적(㎢)	일자	면적(㎢)	사 유	
서초	신원	산 40	임야	11,901	11,901	68. 4.23	11,901	사방사업법 20조 1항 동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산 41	"	11,286	11,286	"	11,286	
"	"	산 42	"	2,479	2,479	"	2,479	
"	"	산 43	"	8,429	8,429	"	8,429	
"	"	산 44	"	1,686	1,686	"	1,686	
"	"	산 45	"	6,421	5,421	"	5,421	
"	"	산 47	"	2,380	2,380	"	2,380	
"	"	산 48-1	"	25,785	25,785	"	25,785	
"	"	산 50-1	"	66	66	"	66	
"	"	산 52	"	17,058	17,058	"	17,058	
"	"	산 54	"	73,587	73,587	"	73,587	
"	"	산 55-2	"	44,628	44,628	"	44,628	
"	"	산 55-3	"	22,116	22,116	"	22,116	
"	내곡	산 13-1	"	2,509,001	2,509,001	58. 1.11	2,509,001	
"	"	산 13-196	"	366,929	366,929	68. 4.23	366,929	
"	원지	산 4-1	"	10,909	10,909	"	10,909	
"	"	산 4-2	"	3,471	3,471	"	3,471	
"	"	산 4-3	"	52,562	52,562	"	52,562	
"	"	산 4-5	"	56,033	56,033	"	56,033	
"	"	산 4-6	"	222,149	222,149	"	222,149	
"	"	산 4-15	"	126,942	126,942	"	126,942	
"	"	산 4-16	"	21,322	21,322	68. 4.28	21,322	
"	"	산 4-18	"	44,430	44,430	"	44,430	
"	"	산 4-19	"	2,479	2,479	"	2,479	
"	"	산 4-24	"	19,835	18,835	"	19,835	
"	"	산 10	"	52,560	52,560	"	52,560	
"	"	산 11	"	12,298	12,298	"	12,298	

72-36 제 1426 호 시

일 1988.12.5

구 동	지 번	지 목 (㎡)	지 정		액 제		비 고	
			면적(㎡)	일 자	면적(㎡)	사 유		
서초	원지	산 12	임야	8,529	8,529	68. 4.28	8,529	사방사업법 20조 1항 등 시행령 2조에 의한 지권 해제
"	"	산 13	"	19,338	19,338	"	19,338	"
"	"	산 15	"	11,901	11,901	"	11,901	"
"	"	산 21	"	74,376	74,376	"	74,376	"
"	"	산 23	"	80,231	80,231	"	80,231	"
"	"	산 28	"	36,893	36,893	"	36,893	"
"	"	산 34	"	5,355	5,355	68. 4.23	5,355	"
"	"	산 35	"	3,570	3,570	"	3,570	"
"	"	산 36	"	7,637	7,637	"	7,637	"
"	"	산 40	"	2,272	2,272	"	2,272	"
"	"	산 41	"	12,495	12,495	"	12,495	"
"	"	산 42	"	114,744	114,744	"	114,744	"
"	"	산 43	"	7,339	7,339	"	7,339	"
"	"	산 44	"	34,215	34,215	"	34,215	"
"	"	산 45	"	22,810	22,810	"	22,810	"
"	"	산 46	"	2,975	2,975	"	2,975	"
"	"	산 47	"	62,480	62,480	"	62,480	"
"	"	산 50	"	2,579	2,579	"	2,579	"
"	"	산 51-1	"	10,810	10,810	"	10,810	"
"	"	산 52	"	32,825	32,825	"	32,825	"
"	"	산 54	"	7,537	7,537	"	7,537	"
"	"	산 56-1	"	32,628	32,628	"	32,628	"
"	"	산 64	"	25,289	25,289	"	25,289	"
"	"	산 65	"	4,661	4,661	"	4,661	"
"	"	산 67	"	13,388	13,388	"	13,388	"
"	"	산 68	"	19,041	19,041	"	19,041	"
"	"	산 71-1	"	24,198	24,198	"	24,198	"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37

구 동	지 번	지 목 (㎡)	지 적 정 례 제				비 고
			면적(㎡)	일 자	면적(㎡)	사 유	
서초	원지	산 71-2	임야	1,388	1,388	68. 4.23	1,388 사방사업법 20조 1당 등 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산 71-3	"	694	694	"	694 "
"	"	산 72	"	79,041	79,041	"	79,041 "
"	"	산 73-1	"	3,107	3,107	"	3,107 "
"	"	산 73-3	"	4,767	4,767	"	4,767 "
"	"	산 73-4	"	3,339	3,339	"	3,339 "
"	"	산 73-6	"	655	655	"	655 "
"	"	산 76	"	14,479	14,479	"	14,479 "
"	"	산 77	"	19,834	19,834	"	19,834 "
"	"	산 78-1	"	20,678	20,678	"	20,678 "
"	"	산 78-2	"	36,585	36,585	"	36,585 "
"	"	산 78-3	"	1,005	1,005	"	1,005 "
"	"	산 78-4	"	4,013	4,013	"	4,013 "
"	"	산 79-2	"	26,281	26,281	"	26,281 "
"	"	산 82-2	"	11,306	11,306	"	11,306 "
"	"	산 82-3	"	21,488	21,488	"	21,488 "
"	"	산 82-4	"	1,289	1,289	"	1,289 "
"	"	산 82-5	"	7,686	7,686	"	7,686 "
"	"	산 82-6	"	8,132	8,132	"	8,132 "
"	"	산 82-7	"	4,661	4,661	"	4,661 "
"	"	산 82-8	"	926	926	"	926 "
"	"	산 82-9	"	2,430	2,430	"	2,430 "
"	"	산 83-1	"	142,017	142,017	"	142,017 "
"	"	산 83-2	"	17,851	17,851	"	17,851 "
"	"	산 84	"	26,281	26,281	"	26,281 "
"	"	산 85	"	23,207	23,207	"	23,207 "
"	"	산 86	"	39,868	39,868	"	39,868 "

72-38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소재지			지목 (㎡)	지정해제계				비고
구	동	지번		면적(㎡)	일자	면적(㎡)	사유	
서초	원자	산 87	임야	55,554	65,554	68. 4.23	65,554	사방사업법 20 조 1항 동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산 88-1	"	51,924	51,924	"	51,924	"
"	"	산 92-1	"	6,612	6,612	"	6,612	"
"	"	산 94	"	28,263	28,263	"	28,263	"
"	"	산 95	"	12,193	12,193	"	12,193	"
"	"	산 96	"	4,562	4,562	"	4,562	"
"	"	산 97	"	5,157	5,157	"	5,157	"
"	"	산 106	"	61,686	61,686	"	61,686	"
"	"	술 107	"	86,280	86,280	"	86,280	"
"	"	술 108	"	37,785	37,785	"	37,785	"
"	"	술 112	"	33,124	33,124	"	33,124	"
"	"	술 114	"	106,909	106,909	"	106,909	"
"	우편	산 34-1	"	264,586	264,586	"	264,586	"

⑤ 서울특별시고시제 917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였기 이를 고
시합니다.

1986.11.24

서울특별시장

사방사업법 제 20조 동시행령 제 2

사방지 지정의 해제명세서

소재지			지목 (㎡)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	구	동					주	소	성명
서울	동작	동작	산 25-1	임 6,863	6,863	6,863	성동구 옥수동 2-9	이기선	
"	"	"	산 27	" 16,860	16,860	16,860	서대문구 합동 32	박성일	
"	"	"	산 28-1	" 22,405	22,405	22,405	용산구 갈월동 6-5	김덕기	
"	"	"	산 28-1	" 1,097	1,097	1,097	"	"	

제 1426 호 시

보 1988. 12. 5 72-39

시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지정	폐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성명
서울	동작	동작	산 28-5	임	727	727	727	동작구 동작동 산 28-3	김영호
			산 28-6	·	79	79	79	용산구 갈월동 6-5	의 15 인
			산 28-8	·	8	8	8		김택기
			산 28-9	·	1,307	1,507	1,507		
			산 28-10	·	6,452	6,452	6,452		
			산 28-11	·	402	402	402	서울시자 하철공사	
			산 28-12	·	203	203	203		
			산 29-2	·	5,693	5,693	5,693	서울시	
			산 29-3	·	16,704	16,704	16,704	서대문구 합정동 323	박성일
			산 29-4	·	1,435	1,435	1,435		
			산 29-5	·	1,742	1,742	1,742		
			산 30-1	·	631	631	631	국(국방부)	
			산 30-3	·	694	694	694	·(·)	
			산 30-4	·	67	67	67	·(·)	
			산 30-5	·	1,228	1,228	1,228	·(·)	
			산 30-6	·	187	187	187	·(·)	
			산 30-7	·	7	7	7	·(·)	
			산 30-8	·	921	921	921	·(·)	
			산 30-9	·	33,256	33,256	33,256	·(·)	
			산 31-6	·	12,198	12,198	12,198	·(·)	
			산 31-7	·	2,598	2,598	2,598	·(·)	
			산 31-8	·	42,793	42,793	42,793	·(·)	
			산 33-3	·	14,281	14,281	14,281	·(·)	

72-40 제 1426 사

보 1988.12.5

시 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해 세	소유자 또는 청유자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동하	산 33-4	임	29,752	29,752	29,752	국 (국방부)
*	*	*	산 33-5	*	29,752	29,752	29,752	*
*	*	*	산 33-6	*	29,752	29,752	29,752	*
*	*	*	산 33-7	*	29,158	29,158	29,158	*
*	*	*	산 33-8	*	29,752	29,752	29,752	*
*	*	*	산 37-1	*	35,749	35,749	35,749	*
*	*	*	산 37-2	*	595	595	595	*
*	*	*	산 37-3	*	251	251	251	*
*	*	*	산 37-4	*	1,091	1,091	1,091	*
*	*	*	산 38-1	*	18,942	18,942	18,942	서대문로 2 가 108
*	*	*	산 38-4	*	1,587	1,587	1,587	국 (국방부)
*	*	*	산 38-2	*	32,033	32,033	32,033	*
*	*	*	산 3	*	4,463	4,463	4,463	*
*	*	*	산 4-2	*	14,825	14,825	14,825	학교법인 경문
*	*	*	산 11-1	*	10,446	10,446	10,446	명치정 2 정목 97
*	*	*	산 11-2	*	397	397	397	사당동 46
*	*	*	산 11-4	*	165	165	165	*
*	*	*	산 11-5	*	694	694	694	명치정 2 정목 97
*	*	*	산 11-6	*	396	396	396	사당동 46
*	*	*	산 11-7	*	198	198	198	*
*	*	*	산 12	*	3,849	3,849	3,849	사당동 52
*	*	*	산 12-1	*	515	515	515	*
*	*	*	산 13-1	*	5,349	4,364	4,364	강창수

시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	소	성명
서울	동작	동작	산 14	임	1,984	1,984	1,984	사당 등 100		박 미 성
			산 16-1	·	7,914	7,914	7,914	· 58-84		고 대 일
			산 16-2	·	179	179	179	사당동 산 14		이 원 조
			산 16-3	·	331	331	331	강남구 서초동 산 187-11		박 명식
			산 16-4	·	165	165	165	태고총		강 해 원
			산 16-5	·	162	162	162			·
			산 16-6	·	261	261	261			홍 원 표
			산 16-7	·	221	221	221			임 혁 속
			산 16-11	·	2,030	2,030	2,030			고 대 일
			산 18-1	·	35,715	35,715	35,715	도봉구 수우동 404-8		민회 정자
			산 18-2	·	46	46	46	중구 내경로 2 가 250		연합회
			산 18-3	·	225	225	225			·
			산 18-4	·	807	807	807			서 투 촬
			산 20	·	14,083	14,083	14,083	성북구 동선동 4 가 242		김 종 수
			산 21	·	12,883	12,883	12,883	용산구 청파동 2 가 72-2		김 흥 범
			산 22-6	·	11,055	11,055	11,055			국
			산 22-7	·	9,061	9,061	9,061			·
			산 22-9	·	22,605	22,605	22,605			·
			산 22-11	·	98,585	98,585	98,585			·
			산 22-5	·	13,399	13,399	13,399			·
			산 23-2	·	12,397	12,397	12,397			·
			산 24	·	4,265	4,265	4,265			·
		목석	산 26	·	5,663	5,663	5,663			학교법인 중앙

72-42 제 1426 호 시

보 1938.12.5

시	구	동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또는 정유자		
									주	소	성명
서울	동작	흑석	산 27	임	27,372	27,372	27,372				재단법인경 석정에스터 학교법인 중
			산 28		6,546	6,546	6,546				
			산 36		2,480	2,480	2,480				
			산 38		19,339	19,339	19,339				국
			산 39		10,612	10,612	10,612				
			산 41		1,984	1,984	1,984		종로구승인동 211-14		이세봉
			산 42		45,025	45,025	45,025				국
			산 43-2		3,625	3,625	3,625		학교법인		중앙학원
			산 43-4		188	188	188		흑석동산 43-2		신홍영
			산 43-13		215	215	215				대한민국 (재무부)
			산 43-14		3	3	3				
			산 43-15		17	17	17				
			산 43-16		53	53	53				
			산 43-17		179	179	179		흑석동산 42		이삼성
			산 43-18		201	201	201				중앙학원
			산 49-19		403	403	403				
			산 56		3,048	3,048	3,048				국
			산 59		10,612	10,612	10,612		종구충무로 3 가 50		학교법인 인하
			산 60		22,810	8,033	8,033				서울시
			산 61		7,700	7,700	7,700				
			산 63		60,968	4,672	4,672				
			산 70		19,736	18,463	18,463		강남구반포동 264-6		조숙희
			산 71		893	893	893		신반포 3 지구 APT		최순진
			산 78-2		16,825	14,776	14,776		성북구신당동 366-113		전길웅
									산 79-2		외 4 일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3

소재지			자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또는 임유자	
시	구	동					주소	성명
서울	동작	흑석	산 83-4	임 694	694	694		국 유 지
"	"	"	산 83-25	" 468	469	469		"(서울특별시)
"	"	"	산 83-26	" 1,226	1,226	1,226		국 유 지
"	"	"	산 83-27	" 1,983	1,983	1,983	산 5-36	목 하 청
"	"	"	산 83-37	" 6,843	6,843	6,843	흑석동 산 42-3	방 일 경
"	"	"	산 83-41	" 264	264	264		서울특별시
"	"	"	산 83-43	" 198	198	198	흑석동 37-28	이 용 훈
"	"	"	산 83-44	" 189	189	189		천 대 종
"	"	"	산 83-50	" 126	126	126		"
"	"	"	산 88-3	" 298	298	298	흑석동 86	이기승(설장)
"	"	"	산 88-13	" 1,815	1,815	1,815		"
"	"	"	산 88-14	" 24,212	24,212	24,222	흑석동 88-5	박 원 용
"	"	"	산 88-15	" 423	423	423	" 86	이기승(설장)
"	"	"	산 88-18	" 298	298	298		(서울특별시)
"	"	"	산 88-25	" 166	166	166	흑석동 33-42	서 경 일
"	"	"	산 88-26	" 20	20	20		국 유 지
"	"	"	산 88-27	" 83	83	83		서울특별시
"	"	"	산 88-29	" 124	124	124	산 88-29	차 경 수
"	"	"	산 88-33	" 33	33	33		국 유 지
"	"	"	산 88-35	" 198	198	198		"
"	"	"	산 88-36	" 860	860	860		서울특별시
"	"	"	산 88-37	" 1,190	1,190	1,190		"
"	"	"	산 88-38	" 529	529	529		국 유 지
"	"	"	산 88-39	" 1,630	1,630	1,630		서울특별시
"	"	"	산 88-40	" 89	89	89		국(제2부)
"	"	"	산 88-41	" 162	162	162		"
"	"	"	산 88-42	" 119	119	119		

72-44 제 1426 호

제 1988. 12. 5

소 개 지				지	폭	차	정	해	제	소유자 또는 경유자	
시	구	동	지 번	면	적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흑석	산 88-40	일	139	139	139	139	139	국(재무부)	
*	*	*	산 88-48	*	89	89	89	89	89	서울특별시	
*	*	*	산 88-52	*	397	397	397	397	397		
*	*	*	산 88-54	*	129	129	129	129	129	산 88	박 충 친
*	*	*	산 88-55	*	33	33	33	33	33	국 유 지	
*	*	*	산 88-57	*	139	139	139	139	139	도봉구 공농동 흥우사 117호	정 하 영
*	*	*	산 88-58	*	112	112	112	112	112	흑석동 산 88-5	황 의 랑
*	*	*	산 88-59	*	612	612	612	612	612		국 육 지
*	*	*	산 88-61	*	116	116	116	116	116		서울특별시
*	*	*	운 88-62	*	124	124	124	124	124	종로구 청운동 산 4-25	하 선 석
*	*	*	산 89	*	2,976	2,976	2,976	2,976	2,976	국 유 지	
*	*	노원구	산 8-15	*	231	231	231	231	231	산 8	장업준 외 2
*	*	*	산 8-16	*	66	66	66	66	66	국 유 지	
*	*	*	산 9-10	*	10	10	10	10	10		
*	*	*	산 11-16	*	198	198	198	198	198		
*	*	*	산 11-27	*	198	198	198	198	198		
*	*	*	산 11-28	*	7	7	7	7	7		
*	*	*	산 11-32	*	694	694	694	694	694		
*	*	*	산 11-36	*	40	40	40	40	40		
*	*	*	산 11-40	*	99	99	99	99	99		
*	*	*	산 11-42	*	1,233	1,233	1,233	1,233	1,233		
*	*	*	산 11-46	*	3	3	3	3	3		
*	*	*	산 11-47	*	298	298	298	298	298		
*	*	*	산 11-48	*	56	56	56	56	56		
*	*	*	산 11-49	*	60	60	60	60	60		
*	*	*	산 11-58	*	99	99	99	99	99		

제 1426 호 시

보 1983. 12. 5 72-45

서 지 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해 재 면 적	소유자 또는 정유자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상 도	산 43-4	임야	106	106	106	고 용 은
"	"	산 43-7	"	23	23	23	영동포구신길동 329-70	김 방 회
"	"	산 43-8	"	73	73	73	노량진 74	전주이씨봉신공파
"	"	산 43-9	"	17	17	17	강남구서초동 1559	고 용 은
"	"	산 43-12	"	1,590	1,590	1,590	상도동 221	학교법인중앙
"	"	산 47-14	"	469	469	469	용산구이촌동 301-160	김 영 철
"	"	산 47-12	"	13	13	13	산 5-36	목 하 영
"	"	산 47-15	"	99	99	99	용산구이촌동 89	세일산업(주)
"	"	산 47-16	"	36	36	36	"	김 육 력
"	"	산 42-17	"	13,729	13,729	13,729		국 유 지
"	"	산 47-24	"	4,288	4,288	4,288		"
"	"	산 47-25	"	5,560	5,560	5,560		"
"	"	산 47-31	"	1,438	1,438	1,438		"
"	"	산 47-41	"	129	129	129		"
"	"	산 47-44	"	245	245	245		"
"	"	산 47-48	"	119	119	119		"
"	"	산 47-49	"	126	126	126		"
"	"	산 47-53	"	195	195	195		"
"	"	산 47-54	"	195	195	195		"
"	"	산 47-55	"	261	261	261		"
"	"	산 47-56	"	126	126	126		"
"	"	산 47-58	"	149	149	149	청동포구영동포동 631	김 혜 성
"	"	산 47-59	"	152	152	152	봉천동 372-5	김 장 현
"	"	산 49-60	"	17	17	17		국
"	"	산 47-61	"	1,302	1,302	1,302		국
"	"	산 49-1	"	6,529	6,529	6,529	흑석동산 5-36	목 하 영
"	"	산 49-3	"	397	397	397		송 운 실
"	"	산 49-6	"	99	99	99		고 병 암
"	"	산 49-8	"	185	185	185	아양울원천리 59	이 철 술

보 1988.12.5

시 시	구	동	재 지 번	기 지	적	지 정 면 적	책 면 적	소유자 또는 경유자	
								주 소	성명
서울	동작	상도	산49-16	임야	397	397	397		서울시
"	"	"	산49-17	"	397	397	397	상도동1-1	학교법인연합
"	"	"	산49-18	"	20	20	20		서울특별시
"	"	"	산49-26	"	3,408	3,408	3,408	산6	송문자
"	"	"	산49-31	"	99	99	99	혹석동산 5-36	목하영
"	"	"	산49-32	"	99	99	99	"	"
"	"	"	산49-33	"	50	50	50	"	"
"	"	"	산49-34	"	198	198	198		서울특별시
"	"	"	산49-36	"	8,926	8,926	8,926	서대문구천연동 80-23	이종승
"	"	"	산49-41	"	893	893	893	"	"
"	"	"	산49-47	"	155	155	155	상도 1동 782-2	재단법인 성근자
"	"	"	산49-60	"	142	142	142	"	"
"	"	"	산49-62	"	122	122	122	"	"
"	"	"	산49-63	"	390	390	390	"	"
"	"	"	산49-65	"	169	169	169	용산구갈월동 5-13	한자회사경성교
"	"	"	산49-68	"	119	119	119	상도 1동 782-2	재단법인 성근자
"	"	"	산49-69	"	56	56	56	"	"
"	"	"	산49-74	"	99	99	99	서대문구천연동 80-23	이종승
"	"	"	산49-78	"	11,643	11,643	11,643	혹석동산 5-36	목하영
"	"	"	산49-79	"	33	33	33	"	"
"	"	"	산49-80	"	30	30	30	"	"
"	"	"	산49-81	"	145	145	145	"	"
"	"	"	산49-85	"	26	26	26	혹석동 79-41	임진희
"	"	"	산49-86	"	939	939	939	혹석동산 5-36	목하영
"	"	"	산49-87	"	179	179	179	도봉구방학동 632-44	한병우
"	"	"	산49-88	"	83	83	83	혹석동 198-83	이희돌

시	구	동	지번	지목	지	면	정	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	소
서울	동작	상도	산49-89	임야	66	66	66	66	흑석동 198-83	이희돌
"	"	"	산49-90	"	106	106	106	106	상도 1동 620	김상봉
"	"	"	산49-31	"	89	89	89	89		
"	"	"	산49-92	"	179	179	179	179	"	"
"	"	"	산49-93	"	20	20	20	20	"	
"	"	"	산49-94	"	109	109	109	109	영등포구신도림동 1043-30	이우정
"	"	"	산49-95	"	83	83	83	83	"	"
"	"	"	산49-96	"	7	7	7	7	상도 1동 620	김상봉
"	"	"	산49-97	"	122	122	122	122	"	"
"	"	"	산49-98	"	56	56	56	56	은평구동암동 280-9	김회주
"	"	"	산49-99	"	155	155	155	155	관악구신림동 127-59	유언열
"	"	"	산49-100	"	208	208	208	208	강도 1동 620	김상주
"	"	"	산49-101	"	469	469	469	469	"	
"	"	"	산49-102	"	152	152	152	152	흑석동 198-83	이희돌
"	"	"	산49-103	"	152	152	152	152	영등포구신길동 329-59	이희영
"	"	"	산49-121	"	1,795	1,795	1,795	1,795	흑석동산 5-36	육하영
"	"	"	산57-121	"	8,975	8,975	8,975	8,975		서울특별시
"	"	"	산57-9	"	99	99	99	99	동대문구체기 1동	윤양선
"	"	"	산57-14	"	132	132	132	132	중구을지로 3가 296-2	대한주택공사
"	"	"	산57-15	"	8,774	8,774	8,774	8,774	상도 1동 116-18	최호우
"	"	"	산57-17	"	694	694	694	694	중구소공동 45	대한주택공사
"	"	"	산57-18	"	26	26	26	26	"	"
"	"	"	산57-19	"	549	549	549	549	중구화랑동 74-36	장완식

72-48 제 1426 호 시

보 1988. 12. 5

소재지							해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기번	지목	지점	지면적		주소	성명
서울	동작	상도	산 57-22	임야	49	49	49	종로구 해화동 126-106	김병인
"	"	"	산 57-23	"	208	208	208	130-24	유형석
"	"	"	산 57-31	"	93	93	93	종로구 해화동 74-36	장완식
"	"	"	산 57-32	"	347	347	347	중구 남산동 3 가 18-9	윤정화
"	"	"	산 57-34	"	26	26	26	126-2	장완식
"	"	"	산 57-35	"	6,060	6,060	3,060	부천시 송내동 589 상의아파트 2	김홍박
"	"	"	산 57-36	"	7,418	7,418	7,418	광악구 신림동 77-15	삼진토지 개발(주)
"	"	"	산 57-37	"	506	506	506	용산구 청파동 1 가 33-1	곽기준
"	"	"	산 57-38	"	46	46	46		이영희
"	"	"	산 57-39	"	30	30	30		합자회사
"	"	"	산 57-40	"					경성고
"	"	"	산 57-42	"	539	539	539	중구 소공동 45	대한주택공사
"	"	"	산 57-43	"	6,787	6,787	6,787	마포구 창천동 100-43	김채열
"	"	"	산 57-44	"	12,988	12,988	12,988	종로구 옥인동 47-2	배정수
"	"	"	산 57-46	"	198	198	198	상도 1 동 126-75	박춘원
"	"	"	산 57-47	"	73	73	73	성북구 삼선동 5 가 63-8	김채열
"	"	"	산 57-50	"	159	159	159	상도 1 동 126-109	방정임
"	"	"	산 57-52	"	129	129	129	126-28	홍성진
"	"	"	산 57-53	"	99	99	99	중구 소공동 45	조선주택영단
"	"	"	산 57-55	"	43	43	43	성북구 삼선동 5 가 63-8	김채열

시	구	동	번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	스	성명
서울	동작	상 도	산 57-56	임야	63	63	63	성북구 삼선동 5가 63-8	김 채 열	
"	"	"	산 57-57	"	79	79	79	"	"	
"	"	"	산 57-58	"	13	13	13	"	"	
"	"	"	산 57-59	"	215	215	215	종로구 연지동 136-46	대한예수	
"	"	"	산 57-60	"	126	126	126	산 57-60	이 순희	
"	"	"	산 57-61	"	10	10	10	성북구 삼성동 5가 63-8	김 채 열	
"	"	"	산 57-62	"	119	119	119	"	"	
"	"	"	산 57-63	"	109	109	109	관악구 통천동 101	체 익 배	
"	"	"	산 57-64	"	119	119	119	서대문구 송월동 42	이 복덕	
"	"	"	산 57-65	"	93	93	93	성북구 삼선동 63-8	김 채 열	
"	"	"	산 57-66	"	60	60	60	"	"	
"	"	"	산 57-67	"	102	102	102	관악구 통천동 산 101-124	강 점례	
"	"	"	산 57-68	"	60	60	60	성북구 삼성동 3가 63-8	김 채 열	
"	"	"	산 57-69	"	278	278	278	성북구 삼성동 5가 63-8	"	
"	"	"	산 57-70	"	20	20	20	"	"	
"	"	"	산 57-71	"	165	165	165	산 57-70	이 복덕	
"	"	"	산 57-73	"	516	516	516	마포구 창천동 100-43	김 채 열	
"	"	"	산 57-74	"	208	208	208	상도동 126-120	전 총 육	

72-50 제 1426 호 시

1988.12.5

시	구	동	지번	지목	기적	지정	면적	면적	해제	소유자 또는 임유자	
										주 소	성 명
서울	종로	상도	길 57-75	임야	195	195	-195	-195	상도동 126-120	전·준·육	
"	"	"	길 57-77	"	2,017	2,017	2,017	2,017	상도 1동 126-70	류·형·식	
"	"	"	길 57-78	"	384	384	384	384	성북구 하월곡동 37-27	정·문·용	
"	"	"	길 57-79	"	407	407	407	407	"	"	
"	"	"	길 57-80	"	340	340	340	340	"	"	
"	"	"	길 57-81	"	1,607	1,607	1,607	1,607	창천동 100-43	김·채·열	
"	"	"	길 58	"	198	198	198	198	상도 1동 113-13	김·영·신	
"	"	"	길 64-23	"	66, 116	66, 116	66, 116	66, 116	중구 신당동 340-29	백·경·순	
"	"	"	길 65-3	"	298	298	298	298		이·재·기	
"	"	"	길 65-4	"	66	66	66	66		"	
"	"	"	길 65-11	"	95, 729	95, 729	95, 729	95, 729	중구 남대문로 5가 20-1	이·정·씨	
"	"	"	길 65-12	"	10, 519	10, 519	10, 519	10, 519	"	재·단·법·인· 자·역·사	
"	"	"	길 65-19	"	9, 626	9, 626	9, 626	9, 626	길 65-49	이·용·구	
"	"	"	길 65-32	"	2, 479	2, 479	2, 479	2, 479	221	재·단·법·인· 자·역·사	
"	"	"	길 65-53	"	694	694	694	694	"	"	
"	"	"	길 65-59	"	142	142	142	142		서울특별시	
"	"	"	길 65-69	"	158	158	158	158	159-78	김·광·수	
"	"	"	길 65-70	"	89	89	89	89	충남 공주군에 흥천유령리 530	김·정·현	
"	"	"	길 65-73	"	3, 389	3, 389	3, 389	3, 389	성북구 석포동 168-55	백·복·민	
"	"	"	길 65-74	"	30, 879	30, 879	30, 879	30, 879	221	재·단·법·인· 자·역·사	
"	"	"	길 65-75	"	4, 790	4, 790	4, 790	4, 790	남대문로 5	전·주·이·씨· 양·명·택	
"	"	"	길 65-76	"	331	331	331	331	134-51	재·단·법·인·상·설	
"	"	"	길 65-77	"	331	331	331	331	"	"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또는 임유자	
시	구	동	지번					주 소	성 경
서울	동작	상도	산65-100	임야	1,203	1,203	1,203	영등포구여의도동 1-574	대광진홍재
"	"	"	산65-104	"	4,087	4,087	4,087	종로구사직동 262-25	서진우
"	"	"	산65-105	"	1,029	1,029	1,029	"	"
"	"	"	산65-110	"	2,789	2,789	2,789	중구남대문로 5가 20-1	전주이석
"	"	"	산65-113	"	5,127	5,127	5,127	산 65-49	이운구
"	"	"	산65-115	"	7,141	7,141	7,141	마포구신수동 69-58	이영선
"	"	"	산65-116	"	4,760	4,760	4,760	"	"
"	"	"	산65-117	"	3,327	3,327	3,327	성북구성북동 168-55	백나민
"	"	"	산65-118	"	50	50	50		서울특별시
"	"	"	산65-127	"	1,018	1,018	1,018	134-51	재단법정
"	"	"	산65-131	"	701	701	701	영등포구여의도동 1-574	대광진홍재
"	"	"	산65-138	"	476	476	476	마포구신수동 69-58	이복재
"	"	"	산65-139	"	119	119	119	201-136	양원석
"	"	"	산65-141	"	694	694	694	마포구신수동 69-58	이영백
"	"	"	산65-142	"	661	661	661	중구남대문로 2가 20-1	전주이석
"	"	"	산65-143	"	430	430	430	159-78	신창보
"	"	"	산65-144	"	272	272	272	"	서경인
"	"	"	산65-145	"	1,369	1,369	1,369	중구남대문로 5가 20-1	재단법인
"	"	"	산65-146	"	1,369	1,369	1,369	성북구성북동 168-55	백나인
"	"	"	산65-147	"	801	801	801	성북구동선동 2가 135-16	최지하
"	"	"	산65-149	"	5,243	5,243	5,243	성북구성북동 168-55	백나인
"	"	"	산65-150	"	9,946	9,946	9,946	"	"
"	"	"	산65-151	"	201	201	201	"	"

72-52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법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서울	동작	상도	산65-154	임야	153	153	153	중구 남대문로 5가 20-1	전주 이씨 양령태
"	"	"	산65-155	"	9,004	9,004	9,004	성북구 성복동 168-55	백낙민
"	"	"	산65-156	"	480	480	480	영등포구 여의도동 1-574	대광진 홍씨
"	"	"	산65-157	"	335	335	335	강서구 등촌동 483-41	이영배
"	"	"	산65-158	"	25,020	25,020	25,020		서울시
"	"	"	산65-160	"	659	659	659	종로구 사직동 262-25	주진우
"	"	"	산67-13	"	10,672	10,672	10,672	용산구 효창동 13-26	김달용
"	"	"	산67-116	"	126	126	126		서울특별시
"	"	"	산67-117	"	4,449	4,449	4,449	구로구 독산동 957	김종훈
"	"	"	산75-1	"	24,423	24,423	24,423		서울특별시
"	"	"	산75-3	"	12,912	12,912	12,912		"
"	"	"	산75-4	"	163	163	163		"
"	"	"	산75-5	"	302	302	302		"
"	"	"	산75-6	"	838	838	838		"
"	"	"	산76-1	"	18,942	18,942	18,942	구로구 푸산동 228	사자양
"	"	"	산77-1	"	4,436	4,436	4,436		서울특별시
"	"	"	산77-12	"	504	504	504		"
"	"	"	산77-13	"	1,411	1,411	1,411		"
"	"	"	산77-14	"	202	202	202		"
"	"	대방	산84	"	50,089	50,089	50,089		국
"	"	"	산84-2	"	15,627	15,627	15,627		"
"	"	"	산84-1	"	231	231	231		"
"	"	"	산84-6	"	14,579	14,579	14,579		"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53

소 채 지				지 목	지 적	지 정		해 제	소 유자 또는 첨 유자	
시	구	동	지 번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대방	산28-2	일야	3,273	3,273	3,273			국
"	"	상도	산31	"	15,273	15,273	15,273			"
"	"	"	산17	"	27,855	27,855	27,855			"
"	"	"	산25	"	12,794	12,794	12,794			"
"	"	"	산95-1	"	29,753	29,753	29,753			"
"	"	"	산99	"	47,009	47,009	47,009			"
"	"	"	산102-1	"	7,100	7,100	7,100			"
"	"	"	산105	"	6,837	6,837	6,837			"
"	"	"	산106-1	"	11,901	11,901	11,901			"
"	"	신대방	산146-4	"	37	37	37	중구소공동 112-5	원종모방주	
"	"	"	산146-5	"	1,708	1,708	1,708	"	"	"
"	"	"	산143	"	1,785	1,785	1,785	수원서신면사관리	홍종용	
"	"	"	산144-2	"	3,511	3,511	3,511	영등포구영등포동5가 125	이경모	
"	"	"	산144-3	"	14,100	14,100	14,100	"	"	
"	"	"	산144-4	"	129	125	129	"	"	
"	"	"	산151-2	"	727	727	727	중구소공동 112-5	원종산업주	
"	"	"	산167-1	"	1,765	1,765	1,765	영등포구대림동 150-19	장로교회 (운화교회)	
"	"	"	산169-3	"	7,732	7,732	7,732	중구소공동 112-5	원종모방주	
"	"	"	산173-1	"	10,612	10,612	10,612	"	"	
"	"	"	산175-4	"	101	101	101	중구소공동 599-30	이문기	
"	"	"	산115-2	"	238	238	238		국	
"	"	"	산115-11	"	40	40	40		김순권	
			356	"	1848,913	1773,732	1773,732			

◎서울특별시고시제 918 호

가스사업동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지침

서울특별시 가스사업동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지침(서울특별시 고시 제 79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한다.

1988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용재

제 4조를 삭제하고 제 5조를 제 4조로, 제 6조를 제 5조로 한다.

제 5조(행정처분기준) 제 1항 별표 2 안전유지 및 위해예방 조치 항목 중 특성고압가스 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처분기준중 2회 위반시 “경고”를 “사용정지(시설보완시까지)”로, 3회 위반시 “사용정지(시설보완시까지)”를 삭제하고, 동 항목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위반사항

특성고압가스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당장) 위해 발생 우려시

제 2항중 “5일이내”를 “10일이내”로 한다.

관련법규

- 고법 제 20조 사용정지
- 액법 제 29조 (시설보완시까지)
- 도법 제 26조

처분(1회)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한 허가 및 행정처분등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적용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93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호(77.1.4)로 협정 및 통고서 제 869호(86.12.1)로 변경결정된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1.29

서울특별시장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55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 분	동급	류별	폭 원(m)	연 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성 소로	1	10	790	금동 217	궁동 245	(연장)	L = 340m 구간
변 경	"	1	10	790	"	"	선형 조정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82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 호 (87.3.25)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되
서대문구 신촌동 100번지 일대 연세
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 (학교) 이 완
료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1.14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0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연세대학교부속 연세의료원
외사설 및 임상실험실 증축

다. 사업시행면적 : 807,019 m²

라. 사업의 규모

- 동수 : 2동 증축

• 구분 : 지상 1개층 증축
(연 2,091.55 m²)• 신관 : 지상 1, 2층 일부 증축
및 2개층 증축
(연 3,193.84 m²)- 연면적 : 5,285.39 m²마.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 신촌동 134
번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바. 사업기간 : 87.3.25 - 88.10.30

◎ 서울특별시공고제 825 호

특정설비제조업소허가취소처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9조의 규정
의거 특정설비 제조사업 허가를 취소처
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11.16
서 울 특 별 시 장

72-56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허가번호	업 종	상 호	소재지	대표자	허가취소일자	취소사유 및 관련법규
4-2	특정설비 제조 사업	(주) 영 신 설비공업	성동구성수2가 317-5	김 민	88.11.16	(무단이전)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9 조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34 호

가락제2구역 주택 개량재개 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763 호 (86.10.18)로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된 가락 제 2 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 재개발 법 제 48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88.11.18
서울특별시장

- 사업의 명칭 : 가락 제 2 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산 60-3 번지와 29 필기
- 시행자 주소,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94-10호
 - 명칭 : 가락 제 2 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
- 시행 기간 : 1986.10.18 ~ 1989. 6.30
-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한 공중별 공사 시행 내역
 - 가. 토지

- 시행면적 : 17,623.3 m²
- 대지 면적 : 16,948.5 m²
- 공공용지 면적 : 674.8 m²

나. 건물

- 건축면적 : 3,643.31 m²
(전폐율 : 21.49 %)
 - 연면적 : 50,256.3 m²
(용적율 : 265.7 %)
 - 층 수 : 지상 11~15층, 지하 1층
 - 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6. 사업비 재원별 내역
- 아파트 분양금 : 19,283,702,832 원
 - 상가 분양금 : 435,049,650 원
계 19,718,752,482 원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36 호

천호제 2 구역 주택 개량재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

도시 개발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주택 개량 재개발 천호제 2 구역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 재개발법 제 48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1988. 11.
서울특별시장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57

가. 사업의 명칭 : 천호제 2 구역 주택 개
량 재개발 사업

나. 시행자 : 천호제 2 구역 주택 개
량 재개발 조합장 이태형

다. 시행 기간 : 1986.1.18 ~ 1989.12.31
라. 사업시행면적 : 8,851 m²

마. 완료내용

1) 건축시설 : 상가 및 아파트 12 층
1동

○전 축면적 : 3,261.865 m²

○연면적 : 35,792.51 m²

○층 수 : 지하 3 층 지상 12 층

○주용도 : 아파트 : 주거용 (198 가구)
상 가 : 판매시설(16,785.167)

2) 부대 복리시설

○노인회,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
터, 독서실

○ 도시계획 안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짐	종 치	공립장소	비 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중로	2	38-1	15 m	지정900m 변경990m	가회동 (중 1-33)	혜화동 (중 3-7)	종로구청 도시계획비과	일부구간 위치변경

나. 입안사유 : 문화재 (사적 제 122 호
창덕궁) 저축구간의 일부 노선 위치 변경

◎ 서울특별시공고제 839호

서울역 - 서대문제 1 구역 제 7 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68 호 (73.9.6)로 재개

◎ 서울특별시공고제 837호

주민동의 결정취득위한도시계획안 공고

1. 도시계획법 제 11조, 제 16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제 6, 7 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일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 도시계획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88.11.23-1988.12.7

(14 일간)

1988.11.26

서울특별시각

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0 호 (88.11.8)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됨. 서울역 - 서대문 제 1 구역 제 7 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배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72-58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할것이며,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광을 할 것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88.11.2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명칭 : 서울역-서대문 제 1 구역 계 7 지구 재개발사업

나. 사업구역 및 면적

○ 사업구역 : 종구 봉래동 1 가 31 일 대 (부 93 일지)

○ 사업 면적 : 1,665.7 m²

다. 사업시행에 정자 : 종구 태평로 2 개

150 동 방생명보험

대표 이수만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마. 공람기간 : 88.11.22 ~ 88.12.22

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 84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6 호 (75.10.10)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마천동 122~13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가. 공람공고 : 송파구청토목과
(전화 410-3405-8)

나. 공람기간 : 1988.11

1988.11

서울특별시장

- 공람개요 -

1. 사업명 : 송파구 마천동 122~13

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 : 마천동 122 번지 일대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 6 m,

L = 50 m

4.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년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송파구청장)

6. 기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공고에 문의 청구 바람

토 지 조 서

순 위	위 치	지목	면적 (m)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송파구마천동 122-41	대	22	송파구마천동 122-13	도재희	
2	송파구마천동 122-40	*	78	송파구마천동 129-2	김경준	
3	송파구마천동 124-41	도로	10	송파구거여동 183-6 송파구거여동 181번지 강남구청담동 257번지 충랑구현목동 105-19	박정순 김주섭 박봉규 안병우	
4	송파구마천동 122-14	도로		성동구구의동 32-18	최병웅	면적약 30m ²

가·축 및 지장률 조서

순위	위 치	품 명	수 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1	마천동 122-41	전 풀	m	m	마천동 122-13	약 6m ²
2	*	담 장	11	m	도재희	(창고)
3	*	목 련	1	주		
4	*	대추나무	1	*		
5	마천동 124-6	대문(담장)	1	식	관악구봉천동 50-51 김진경	
6	*	124-32	*	1	식 마천동 131-12 오경운	

72-60 제 1426 호 서

보 1988.12.5

◎서울특별시공고제 855 호

역촌구역(2차)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공사 원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7호(82.2.6)
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고, 같은 고시 제 295호(88.4.22)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역촌구역(2차)이 사업시행인가 및 설계도서등에 적합
하게 사용완료 되었기 도시재개발
법 제 48조 규정에 의거 공사원료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명 칭: 역촌구역(2차)주택
개량 재개발사업
-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사업기간: 82.2.6 ~ 88.11.24
- 위 치: 은평구 역촌동 산 22-2
의 39 필지
- 면적: 13,239.60 m^2
 - 밖지: 10,843.30 m^2
 - 도로: 1,597.20 m^2
 - 녹지: 799.10 m^2

- 관계도서: 은평구총, 주택파에
비치

1988.11.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858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 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의 2 규정에 의거 서
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
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립기간: 88.11.28 ~ 88.12.12
(14 일간)

나. 공람장소: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50-1385)

1988.11.28

서울특별시장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 차 장	성동구 광장동 산 29 의 6 필지	약 5,453 m^2	
변 경	도 로	성동구 사근동 301-84 301-58	B = 6 미터 L = 50 미터	폐 지
신 설	"	성동구 응봉로 200-7 200-2	B = 1.5 미터 L = 40 미터	"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51

◎서울특별시공고제 866 호

전기공사업체 행정처분

전기공사업체의 국세 체납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마

같이 행정조치 하고, 전기공사업체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1988.11.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사유
249	대화전기상사	중구오장동 139-10	이창수	영업정지 60일 '88.11.30 ~ '89.1.28	국세체납

◎서울특별시공고제 868 호

서소문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783호(81.12.
2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8호(88.8.25)로 사업시
행 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경빌딩 대표 김종굴의 1인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제 33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

이 있어 동법 제 15조 및 동법시
행령 제 58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
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
객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8.11.30

서울특별시장

가. 원경내용

구 분	기 경	변 경
○ 건물용도	업무시설(부속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 기타사항	변경 없음	(변경전 인가내용과 동일)

72-62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 나. 변경사유: 동지구 사업계획(전축 계획) 변경 결정(서울시 고시 제 880호(88.11.12)에 따른 전동 용도 일부변경임.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라.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869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기간연기) 인가공고

1. 건설부 공고 제 6호 ('71.8.24.)

1988.12.1
서울특별시장

○ 사업계획 변경내역

지구명	인가면적 (m ²)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비고
			기정	변경	
영동	1,851,398	서울특별시장	'71. 8.24~ '88.12.31	'71. 8.24~ '89. 6.30	6개월연장
김포	4,706,334	서울특별시장	'68. 1.23~ '88.12.31	'68. 1.23~ '89.12.31	1년 연장

◎서울특별시공고제 872 호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470호 ('73.12.1)
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4호 ('84.4.20)로 사업시행인가
된 청운 제 1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
개발법 제 48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

라 준공검사를 필하였기 같은법 제
48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
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를 공고합
니다.

1988.11.30

서울특별시장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63

- 공 고 요 지 -

가. 사업명칭 : 청운제 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사업구역 : 종로구 청운동 1 일지동
146 평지 15,840.9 m²

다. 시행자 : 청운제 1 구역 재개발조합
라. 시행기간 : '84.4.20 ~ '88.11.11

마. 사업시행 내역

- 1) 기존건축물 철거 : 113동
- 2) 주택건설 : 3 층 연립주택 9동
126 세대
- 3) 부대복리시설 : 상가 449.83 m²
노인정 272.79 m²

4) 사업비 : 76 억 원

5) 시공자 : 한국건설(주)

구 고 시

◎ 성동구 고시 제 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 588 호 (88.7.6) 호로
고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
진법 제 33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3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11.24

성동구청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좌 동
2. 사업주체	강동구 삼내동 551 동부주택(주) 이용호, 정명섭	좌 동
3. 사업시행위치및규모		
가. 위치	성동구 성수동 1 가 656-322	좌 동
나. 면적 면적	1,999.40	1,970.0
다. 용도	일반분양 연립주택	좌 동
라. 규모	연립 3 층 2 동 36 세대	좌 동
마. 건축연면적	3,361.22	3,328.32
4. 사업시행기간	'88.7 ~ '88.12.31	좌 동
첨부 : 설계도서 (생략)		

72-64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관악구공고제 110호

관인개각사용승인

당구 6동 (봉천 19, 11, 신림 11동)

민원사무전용 계인 및 계인을 다음
과 같이 개각 1988년 12월 5일부터

사용하고 구 공인을 동일자로 폐기한
운 관인규정 제9조 및 관악구 관
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1988.11.28

관 악 구 청 장



봉천제 10동장의인

봉천제 10동제인

봉천제 11동장의인



봉천정

봉천제 11동개인

신림제 11동장의인

신림제 11동제인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55

구 공 고

◎서대문구공고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4 호 ('88.2.8)로 시행허가된 서대문구 홍은동 346-3의 1 필지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8.11.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46-3, 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신진운수(주) 기숙사 신축다. 사업시행면적 : 1,705 m²라. 건물연면적 : 384.6 m²

마.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 층, 지상 2 층

바.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우수동 244-1

신진운수(주) 대표 : 이병호

좌. 사업기간 : '88.2.8 ~ '88.10.30

아. 준용도면 : 병점 (생략)

◎서초구청공고제 149 호

주택자재생산업자 등록취소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41 조 등법 시행령 제 3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 조 규정의 등록기준에 미달 (대지 : 자연녹지(급)) 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41 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 규정에 의거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기 공고합니다.

1988.11.22

서 초 구 청 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품목	등록취소사유	청문실시기간	등록취소일자
19-10	용인전색정찬진	정찬진	서초구왕배동 602	보통시엔트 기와	대지 : 자연 녹지(급) (청문실시 용소불용)	'88.11.1 ~ 11.15	'88.11.22
19-33	우량산업	김신자	서초구왕배동 2873	보통시엔트 벽돌·블록	"	"	"

72-66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도봉구공고제 322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허가
에 따른 서류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98호 ('71.4.7) 및 전설부고시 제 581호 ('71.9.30)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조의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서점비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본 사용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8.11.24

도봉구청장

4. 사업시행지: 도봉구쌍문동 416의

18-416 의 31 간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쌍문동 416 일대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도로 B = 15m,

L = 198m

라. 시행자주소: 서울시종로구안국동 37

성명: 학교법인 여성학원

이사장 박원국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년월일:

1988.12 ~ 1989.8.31

사업소고시

◎환경관리사업소고시제 34호

하천 점용 허가

하천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8.11.18

환경관리사업소장

리 가 날 월 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위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88.11.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3 번지선 (한강)	하천	189 m ²	승선대 설치	'88.11.18 '88.12.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 장동 89	주식회사 삼 수상비찌 대표 이사 심병철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67

사령

⑤ 1988년 11월 24일 7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형제 48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명식	마포구(남지도폐립지폐기물단속)파견 ('88.11.24 - '88.12.30)	송파구	지방환경기사보
박석민	,	도봉구	지방화공기원보

인사발령통지

형제 486 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서기관

구본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88.11.25

내동령

인사발령통지

형제 487 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지방서기관

김홍권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물가지도과장에 보함

'88.11.21

내동령

⑥ 1988년 11월 25일 6급이하 공무원 특별임용 형제 488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명수	지방환경주사	서대문구	행정주사
박영명	지방환경서기	동대문구	행정서기

2436

72-68 제 1436 호 시

보 1988.12.5

⑤ 1988년 11월 26일		5급공무원 전보	형 제 489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식	무자관리 담당관 투자실사 2부장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진	세점과 평가제장	"	"

⑥ 1988년 11월 28일		6급이하공무원 파견해제	형 제 49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진년	교통기획과 과전해제	회계과	지방행정주사

⑦ 1988년 12월 1일 지방별정직 7급상당이하공무원 의원면직		형 제 49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상철	원예 의하여 그직을 면함.	보건환경연구소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상수	"	"	"
이연수	"	"	지방별정직 8급상당
김장열	"	"	"
신도철	"	"	"
최병옥	"	"	"
김병주	"	전자재산소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혜자	"	"	지방별정직 8급상당
이선희	"	"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상태	"	"	"
김여학	"	"	지방별정직 9급상당
이명주	"	"	"
권경희	"	"	지방별정직 9급상당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하공무원 특별감용			형 제 49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이상철	보건환경연구원 공해상비관리요원 (6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설규
이상수	" " (7호봉)	"	"
이연수	공해측정기사 (4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
김장열	" " (4호봉)	"	"
신도철	" " (2호봉)	"	"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69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병우	보건환경연구원 공해측정기사 (4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신규
신미영	공해측정자비관리요원(1호봉) (3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김두래			
박진호			
김성호			
김해경	공해측정기사 (1호봉)		
안경수	" (3호봉)		
윤호균	" (1호봉)		
서미연	" (1호봉)		
이승천	" (2호봉)		
김난국	" (1호봉)		
전용성	" (3호봉)		
임채국	" (1호봉)		
김병주	전자제산소 전산처리사 (4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이해자	" (2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선회	기계처리사 (7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이상태	전산기계기사 (7호봉)		
김여학	천공원 (5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이명주	천공원 (2호봉)		
권경희	선산처리사 (6호봉)		
정재우	" (1호봉)		
김온주	천공원 (5호봉)	지방별정직 9급상당	
김현자	천공원 (1호봉)		
한미경	천공원 (1호봉)		
조형주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1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전동천	경찰국 천공원 (2호봉)	지방별정직 9급상당	

지방별정직 8급상당 의원면직

별제 493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성희석	원예 의하여 그직을 면함.	가정복지과	지방별정직 8급상당
길미영			

72-70 A 1426 E. AJ

1988.12.5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72-71

성명	발령사	항	천부서
김미영	가정복지과 가정상담원 (4호봉)	지방법정직 7급 상당	신구
손순자	" (10호봉)	"	"
김억수	" (9호봉)	"	"
박금자	" (6호봉)	"	"
정현자	" (9호봉)	"	"
노옥란	" (9호봉)	"	"
김종실	" (2호봉)	"	"
이경자	아동복지지도원 (11호봉)	"	"
김명자	" (11호봉)	"	"
박구희	" (4호봉)	"	"
안정자	" (9호봉)	"	"
인준경	" (7호봉)	"	"
유춘식	" (4호봉)	"	"
김미경	" (4호봉)	"	"
김영숙	" (2호봉)	"	"
권필환	" (2호봉)	"	"
남미숙	" (2호봉)	"	"
박은실	" (2호봉)	"	"
신현덕	" (4호봉)	"	"
오창옥	" (3호봉)	"	"
박정규	" (4호봉)	"	"
고광숙	부녀복지과 수석부녀상담원 (8호봉)	지방법정직 6급 상당	"
유영숙	윤락여성지도원 (4호봉)	지방법정직 7급 상당	"
이영숙	일반부녀상담원 (9호봉)	"	"
권태숙	" (11호봉)	"	"
정윤희	마포부녀복지관 " (1호봉)	"	"
이선숙	" (6호봉)	"	"
이순덕	구로부녀복지관 " (4호봉)	"	"
윤연옥	" (4호봉)	"	"
김영희	훈련교사 (14호봉)	지방법정직 8급 상당	"
서정화	" (13호봉)	"	"

2439

72-72 제 1426 호 시

보 1988.12.5

(◎) 1988년 12월 1일 5급이하 공무원 피전 형제 495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윤영선	업무과파견 ('88.12.1-'89.3.31)	서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최광순	"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정무성	"	양천구	"
이무영	"	서초구	"
유희경	"	강남구	지방행정주사보
정경철	"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서기
김명조	"	중랑구	"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보 형제 496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정병선	종합건설본부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원보

6급이하 공무원 전보 형제 497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정종진	중랑구	송파구	지방행정주사
박천희	시립운동장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 5급공무원 추서 형제 481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위	직급
권구소	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	강남구	세무1계장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장.